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수리 의무를 명시하고, 검·경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공소시효 도과 방지를 위해 일부 서식에 공소시효를 명시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제60조제3항”을 “제60조제4항”으로,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안내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리하지 않을”을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을 “제시하는”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사건처리 의견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로 한다.

제28조 중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으로부터”로, “요청한”을 “요청 받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을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9조제2항”을 “제5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9조제3항”을 “제5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또는 접수된 영장신청서등을 검

토한 결과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체포영장 사본의 교부) 검사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제4항 및 수사준칙 제32조의2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그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69조제3항 전단 중 “법 제200조의4제6항”을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로, “같은 조 제4항”을 “법 제200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88조 전단 중 “집행지휘·집행촉탁·반환”을 “집행지휘·집행촉탁·반환, 영장 사본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제63조”를 각각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3조”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사본의 교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및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사본 교부에 관하여는 제59조의2를 준용한다.

제103조제5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제132조제3항 중 “제60조제3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133조제3항 중 “제60조제3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송치요구)”를 “(재수사 결과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재수사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의2서식의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분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 부분을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3항 전단의 요청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136조제7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 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② (생략)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생략)

제319조(별표와 서식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1. ~ 70. (생략)

<신설>

71. 제136조제4항의 송치요구사건부

72. ~ 142. (생략)

②·③ (생략)

-----.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60조 제4항 -----

-----.

④ (현행과 같음)

제319조(별표와 서식 등) ① -----

-----.

1. ~ 70. (현행과 같음)
70의2. 제136조제4항의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

71. 제136조제7항-----
--

72. ~ 14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치요구서 부분을 송부받은 사건
사무담당직원은 송치요구사건
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검사는 수사준칙 제64조제2
항 단서에 따른 송치요구를 하
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기
록 검토결과서를 재수사요청서
사본 및 재수사결과통보서와 함
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제158조(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128호서
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

⑧ -----

-----.
⑨ -----

----.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접
수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사
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8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 송
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다.

제158조(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

----- 별지 제91호서식

8항(종전의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접수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제13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8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
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158조 중 “별지 제128호서식”을 “별지 제91호서식”으로 한다.

제191조제3항 중 “제60조제3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319조제1항에 제7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1호 중
“제136조제4항”을 “제136조제7항”으로 한다.

70의2. 제136조제4항의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0호서식, 별지 제162호서식부터 별지 제165호서식까지, 별지
제188호서식 및 별지 제192호서식부터 별지 제19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
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과 추가된 서류 및 증거물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송

③ 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의2서의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분은 사건 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 부분을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3항 전단의 요청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⑦ 제6항-----

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송부받은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①·② (생략)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생략)

제136조(송치요구) ① (생략)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기록 원본 또는 등본(재수사 결

제60조제4항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0조제4항

④ (현행과 같음)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검찰청

제 0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의 견 내 용

○○○검찰청

검사

인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분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④ (생 략)

제88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집행촉탁·반환,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접견 등 금지, 석방, 구속의 취소 및 석방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5”로,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신 설>

----. -----

--.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준용규정) -----

-- 집행지휘·집행촉탁·반환, 영장 사본의 교부-----

-----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3조-----
-----.

-----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3조-----

-----.

제89조의2(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사본의 교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및 수

영 장 사 본 교 부 확 인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주 거 :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제시받고 그 사본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자

㉠

☐ 위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였음

☐ 위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 위 사람이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였음

※ 사본 수령 거부 또는 기명날인·서명 거부 사유 :

○○○ 검찰청

(직급)

㉡

○ ○ ○ ○ 검 찰 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

제 목: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소속 및 직급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수사개시일자	. . .
죄 명		신 병	
피의사실요지			
비 고	이 건 사실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 (생 략)

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4. 보완수사요구(영장):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차) ①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

1. 2. (현행과 같음)

3. -----

-- 제59조제3항-----

4. -----

----- 제59조제4항-----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또는 접수된 영장신청서등을 검토한 결과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 ○ ○ ○ 검 찰 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

제 목: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고소(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소속 및 직급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수사개시일자	. . .
죄 명		신 병	
피 고 소 (발)			
사 실 요 지			
비 고	이 건 사실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① (생 략)

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사건처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분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 ⑧ (생 략)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 설
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 -----.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시하는 -----
----- 별지 제8
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

----- 요청받은 -----

-----.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검사가 법 제197조의2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범경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시 반환받은 경우(수사준칙 제60조제4항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면서 다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9. ----- ----- ----- ----- 제60조제4항 ----- ----- ----- ----- 제60조제5항 ----- ----- -----
10. ~ 17. (생략)	10. ~ 17. (현행과 같음)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① ~ ③ (생략)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	④ ----- ----- -----

○ ○ ○ 검 찰 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등록번호			
수 신: ○○○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㉞	
제 목: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			
귀(부)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결 정 일 자	죄 명	결 정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피 의 사 실 요 지			
비 고	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검 찰 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등록번호

수 신: ○○○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

제 목: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

귀(부)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피 고 소 (발)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결 정 일 자				죄 명		결 정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피 고 소 (발) 사 실 요 지						
비 고				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

제 목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불송치 기록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 합니다.

경찰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재수사요청일	· · ·	재수사결과 통보일	· · ·
담당자			
비 고			

210mm × 297mm[백상지(80g/㎡)]

공 소 시 효	장 기	.	.	.
	단 기	.	.	.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년 불제 호 . . .		
수신자	검사	㉠
제 목 재수사요청		
아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경 찰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재 수 사 요 청 사 유	※ 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요청 []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기 록 권 수		
압 수 물	유 무	[] 있음 [] 없음
	처 분	가환부대로본환부 제출인환부 피해자환부 보관 폐기 국고귀속 처분지휘보류에 따른 반환
비 고		

공 소 시 효	장 기	.	.	.
	단 기	.	.	.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사건 . . .		
수신	○○○경찰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신 ○○○검찰청
제목	사건이송·이첩서	검 사 ㉠
아래 사건을 이송·이첩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적 용 법 조		
범 죄 사 실		
이 송 · 이 첩 사 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기 록 권 수		
압 수 물		
비 고		

공 소 시 효	장 기	. . .
	단 기	. . .

○○○경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년 월 일		. . .	
수신자 ○○○경찰서		검사 (인)	
제 목 보완수사요구(결정)			
아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 찰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보 완 수 사 요 구 사 유			
기 록 권 수			
압 수 물	유 무	[] 있음 [] 없음	
	처 분	가환부대로 본환부 제출인환부 피해자환부 보관 폐기 국고귀속 보완수사요구에 따 른 반환	
비 고			

공 소 시 효	장 기	. . .
	단 기	. . .

○○○검찰청	
우편번호/ 년 월 일	주소/ 호
전화/ - - - - - -	팩스/ - - - - - -
수신자	검사 인
제 목 보완수사요구(추완)	
아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 찰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보 완 수 사 요 구 사 유	
이 행 기 한	
비 고	